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표부처로 명시》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05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제221560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부처로 명시 (안 제2조제4호,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2

I.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제221560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4.

다. 회 부 일 : 2025. 12.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댐·하천·발전시설 등 주요한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조 및 제7조).

3. 검토의견

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부처로 명시
(안 제2조제4호,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u>중앙행정기관</u>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 7.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 ----- -----.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u>관계</u>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u>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u>관계</u>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u> ----- -----

현행	개정안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u>관계</u>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u>관계</u>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 ----- ----- ----- ----- -----. ②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u>-----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u>----- -----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2조제4호는 공간정보¹⁾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부처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명시하고(안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대표 기관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이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공간정보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난·사고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요 요소라는 점에서 댐·하천·발전시설 등과 관련된 주요한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의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수립·실행 및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²⁾ 의무 등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외에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중요한 공간정보를 생산·관리³⁾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의 부칙은 개정규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21168호 개정(2025. 12. 2. 개정, 2026. 12. 3. 시행)으로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⁴⁾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인바,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6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는 1,241건(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1,029건, 행정안전부 소관이 10건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6건, 환경·자연·기후 분야는 43건 등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 참조.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개정, 2026. 12. 3.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안 제2조제4호가 입법화되는 경우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개정 방식을 취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안 제2조제4호의 시행일을 법률 제21168호의 시행일과 일치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⁵⁾.

문 의 처

02)6788-5578

- 5)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그 시행 전에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적시 대응을 요구하는 입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포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공포일에 바로 현행 법률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까지는 개정된 조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흡수되지 않은 조문을 재개정하는 경우 특히, 개정 조문과 재개정 조문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흡수개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략)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거나 그 이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을 개정하면서 그 시행일보다 먼저 시행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포 순서와 시행 순서가 뒤바뀌어 흡수개정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일보다 먼저 시행해야 한다면 동일한 개정내용을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 모두 개정하는 개정방식을 취하되, 부칙에서 시행일을 달리하여 ‘현행 조문’ 개정은 먼저 시행하고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일과 맞추도록 한다.”(『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157쪽, 162~163쪽)

참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보유 공간정보 현황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모든 관리기관(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간 정보를 연계하여 수집·가공·제공하는 플랫폼 ** 관리기관에서 보안처리 완료 후 제공됨

□ 데이터 연계·활용 현황('24.12월 기준)

- (데이터 제공) 65개 기관 107개 시스템
- (보유 데이터) 1,241건(레이어 기준)

기본공간정보(41건)					
구분	데이터명	유형	구분	데이터명	유형
1	연속지적도(1)	벡터	2	수치표고모형(2)	레스터, 벡터
3	기본도(18)	벡터	4	도로명주소(7)	벡터
5	행정구역(3)	벡터	6	실내공간정보(2)	벡터
7	정사영상(1)	레스터	8	통계구(5)	벡터
9	해양경계(1)	벡터	10	해양지명(1)	속성

보유데이터 목록(1,200건)			
순번	구분	데이터명	비고
1	국토관리 및 지역개발	건물·시설 379건, 경계 21건, 도시계획 30건, 용도 지역지구 309건, 부동산 39건, 산업 5건, 산업단지 21건, 수자원 39건, 토지 78건	921건
2	도로·교통·물류	교통 22건, 도로 35건, 철도 16건, 항공·공항 7건, 해운·항만 4건	84건
3	환경·자연·기후	자연 38건, 임업·산촌 5건	43건
4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20건, 임업·산촌 15건, 해양·수산·어촌 21건	56건
5	산업·중소기업	산업 2건, 에너지 42건,	44건
6	재난방재·공공안전	재난방재 4건	4건
7	문화·체육·관광	국가유산 8건, 체육 1건	9건
8	교육	교육시설 5건	5건
9	보건·의료	-	-
10	사회복지	노동 1건	1건
11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4건	4건
12	과학기술·통신	-	-
13	통일·외교·국방	-	-
14	지도	고도 1건, 기준점 9건, 기타 19건	29건